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42

발의연월일: 2024. 12 27.

발 의 자:김 현·노종면·박해철

김우영 · 조인철 · 최민희

박지원 • 이정헌 • 한민수

윤건영 • 민형배 • 박민규

황정아 · 양부남 · 이훈기

김영환 · 정동영 · 김 윤

이광희 · 이재강 · 이병진

이해민 · 장종태 · 정진욱

임미애 의원(2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9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,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(이하 "문화방송"이라 함)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상태에서 공적책임을 실현하기어려운 구조임.

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, 사회 각 분 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, 문화방송 내부 구성원 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.

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(안 제6조, 제9조, 제10조,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9명의"를 "11명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가"를 "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
- 2.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 가 추천하는 사람 3명
 - 가.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
 - 나.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추천 1명
 - 다.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천 1명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 천하는 사람 3명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여야 하고, 진흥회가

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「방송법」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 성규약으로 정한다.

- 1.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
- 2.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
- 3. 추천 이유

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안건상정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.

제10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제10조의3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0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진흥회는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.
- ④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진흥회의 사장 추천

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3(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진흥회에 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 장후보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진흥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경우 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사 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④ 진흥회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사장후보추천위 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, 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
 -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진흥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진흥회의 이사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에 따라 진흥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 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원) ① 진흥회에는 임원	제6조(임원) ①
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<u>9명</u>	<u>11명</u>
의 이사와 감사(監事) 1명을 두	<u>의</u>
며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	
다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	
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	
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	4
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	
고려하여 <u>방송통신위원회가</u> 임	<u>다음 각 호에 따라</u>
명한다.	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
	<u>가</u>
<u><신 설></u>	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
	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
<u><신 설></u>	2.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
	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
	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
	<u>명</u>
	가.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
	<u>나.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</u>
	<u>모임 추천 1명</u>
	다.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천 1

<신 설>

<신 설>

⑤ · ⑥ (생 략)

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(생 략)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 신설>

명
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 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 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명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시 다음 각 호 에 따라 공정성 및 투명성 확 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여야 하고,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「방송법」 제4 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으로 정한다.
- 1.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
- 2.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
- 3. 추천 이유
- 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- (현행과 같음)

-----. 다만. 제 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

<신 설>

⑤ · ⑥ (생 략)
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• 의 결한다.

1. ~ 10. (생략) <신 설>

11. (생략)

제10조의2(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제10조의2(진흥회가 최다출자자 ①·② (생 략) <신 설>

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안건 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.

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
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------

1. ~ 10. (현행과 같음) 10의2. 제10조의3의 사장후보추 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
11. (현행과 같음)

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)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> ③ 진흥회는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사

<신 설>

<신 설>

장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.
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진흥회의 사장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3(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 등) ① 진홍회에 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진흥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 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경 우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 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만료 3 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 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 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진흥회와 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,

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

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진흥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사회가 정한다.